

경남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중소기업정책 종합정보지입니다.

2024년  
5월호

# 이 달의 중소기업 지원정보



- |   |   |   |  |
|---|---|---|--|
|  중소기업부   |  고용노동부               |  KOSME<br>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KIBO 기술보증기금                                       |  KGIT 신용보증기금         |  (재)경남테크노파크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br>Gyeongnam Center for Creative Economy & Innovation |
|  경남신용보증재단<br>Gyeongnam Credit Guarantee Foundation |  kotra<br>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  창원상공회의소  |
|  KBIZ 중소기업중앙회                                      |  RIPC<br>경남지식재산센터    |  GyeongNam Investment & Business Agency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  김해의생명<br>산업진흥원                                    |  중소기업24              |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br>기업마당 Biz info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본 자료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목 차

## 1. 중소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2024년 틱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	1
② 2024년 제1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2
③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1차)	4
④ 수출컨소시엄 사업	5
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상시모집	5
⑥ 비즈니스지원단 애로상담 및 현장클리닉	7
⑦ 기업 규제·애로 상담 및 해소 지원	7
⑧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8

## 2.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① 기업도약보장패키지	9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10
③ 고용유지지원금(유급)	11
④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3
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14
⑥ 고령자고용지원금	15
⑦ 워라밸일자리장려금	16
⑧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18
⑨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유연근무제)	20
⑩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21
⑪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22
⑫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23

## 3.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①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24
② 내일채움공제	25
③ 기업인력 애로센터	26

## 4.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

① 2024년 5~6월 직무역량향상연수 과정 안내	27
-----------------------------	----

##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①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2분기 접수 개시	29
②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2분기 접수 개시	30
③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소상공인 모집 공고	31

## 6. 기술보증기금 부울경지역본부

① 투자연계보증 지원제도	32
---------------	----

## 7.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

① 2024년 보증지원 계획	34
② 2024년 중점지원 보증	35

# 목 차

## 8.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① 2023 CORN 프로젝트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 36
- ② 2024 경남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 37
- ③ 두산에너지빌리티×스타트업 상생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 38

## 9. 경남신용보증재단

- ①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 39
- ② 재창업 특례보증 ..... 39

## 10.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 ① 수출 초보기업 지원강화 ..... 41
- ② 수출이행자금 기존 보증 건 무감액 연장 실시 ..... 41
- ③ 방산 협력사를 위한 수출파트너보증제도 운영 ..... 42
- ④ 환변동보험제도 운영 ..... 43
- ⑤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제도 운영 ..... 44
- ⑥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제도 운영 ..... 45
- ⑦ 온라인 단기수출보험(중소 PLUS+) 다이렉트 플러스제도 운영 ..... 46
- ⑧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제도 운영 ..... 47
- ⑨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48

## 11.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

- ① OK FTA 컨설팅 ..... 49
- ② FTA 전문 컨설팅 ..... 51

## 12.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 ① 중소기업 전자입찰 실무교육 개최 ..... 52
- ②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안내 ..... 52

## 13. 경남지식재산센터

- ①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 53
- ②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 54
- ③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역량강화 ..... 55

## 14.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 ①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 56
- ② e 경남몰 운영 ..... 58
- ③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사업 ..... 59

## 15.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 ① 현장애로 기업지원단 운영사업 ..... 60

## 16. 경남벤처기업협회

- ① 2024 벤처기업 인증획득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 ..... 61

# 1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

### 2024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

- (사업개요)** 민간 투자사\*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 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 \*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VC, 벤처·중소기업 및 대·중견기업 등
- (지원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 아래 세부 사업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팁스R&D)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기업
  - (딥테크 팁스R&D)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 중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기업
- (지원규모)** 총 3,411억원(신규, 계속, 종료)
  - \* ①팁스 - 기업별 최대 5억원(24개월), ②딥테크 팁스R&D - 기업별 최대 15억원(36개월)
- (지원내용)**
  - (자금 지원) 운영사의 엔젤투자금(팁스-1~2억원, 딥테크 팁스-3억원이상)에 정부가 연구개발비(팁스-최대 5억원, 딥테크 팁스-최대 15억원)을 매칭 지원하고,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기타 지원)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 운영사 지정 보육시설에 입주하여 보육, 멘토링 등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 지원
- (신청기한)** 상시 접수 (별도 접수기간 없음)
- (신청방법)**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 \* 팁스 사업 홈페이지([www.jointips.or.kr](http://www.jointips.or.kr)) 참조
- (세부내용)** 「지원사업명 공고문 보기(Click)」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바람
- (문의처)**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사업부 (02-3440-7421)

## 2

## 24년 제1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 **(사업개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나 글로벌 역량이 부족한 수출 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
- **(지원대상)**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수행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과제에서 “성공(완료)”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 수출지원프로그램 선정 후 1년 내 수출계획이 있는 기업

□ **(지원규모)** 4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 ▶ (사업개요) 수출에 따른 대금미회수 위험 경감
- ▶ (지원 프로그램) ① 단체보험 가입  
②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

- 수출컨설팅 제공

- ▶ (사업개요) 수출기업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청기업의 1:1 수출컨설팅 제공
  - ▶ (지원 프로그램) ③ 수출컨설팅\* 제공
- \* 수출컨설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이며, 본 프로그램 선정기업(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지원,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우선 진행 예정(분야별 1:1 방문 또는 비방문(유선, 이메일, 화상회의))

- 신용조사 지원

- ▶ (사업개요) 해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요약보고서 또는 Full Report\*를 기업별 연간 5회 무료 제공\*\*

- ▶ (지원 프로그램) ④ 수입자 신용조사

\* 무역보험(보증)제도 이용을 위해 국외기업 신용조사를 통한 등급책정이 목적인 경우, 요약보고서만으로도 가능

\*\* Full Report는 현지 조사기관 보고서 포함이며, 보고서 종류 관계없이 5회 무료제공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지원

- ▶ (사업개요) 수출이행자금 확보 및 수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보증 지원
- ▶ (지원 프로그램) 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 및 보증료 할인  
⑥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지원 및 보증료 할인

□ (추진절차)



※ 추진주체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업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신청기한) '24. 4. 24.(수) ~ 5. 13.(월), 16:00까지

□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 [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참가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 신청서류 : [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4년도 제1차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 ▶ **접수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세부내용) 「지원사업명 공고문 보기(Click)」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바람

□ (문의처)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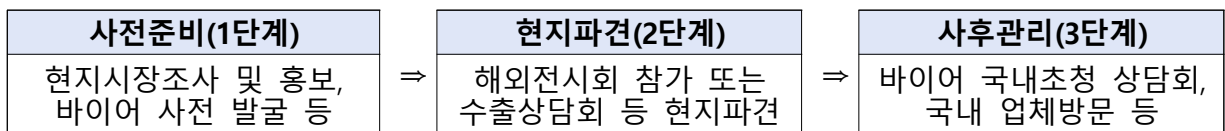
**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1차)**

- **(사업개요)**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70% 지원
- **(지원규모)** (패스트트랙) 연간 500개사 내외(상시모집)  
(일반트랙 1차) 230개사 내외
- **(지원대상)**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4건, 최대 1억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 100억원 미만 70%, 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 **(추진절차)**
  - (패스트트랙) 상시접수(3~8월)을 통해 월별 간이심사로 평가하여 대상기업 선정
  - (일반트랙) 총 3차(2월, 5월, 8월)로 나누어 공고 예정,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기업 선정
- **(신청방법)**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www.smes.go.kr/globalcerti](http://www.smes.go.kr/globalcerti))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패스트트랙**
    - 대상인증(7개 인증 6개 분야) : 유럽CE, 미국FCC, 국제IECEE, 일본PSE, 유럽CPNP, 국제HALAL, 미국FDA (1차 사업 공고문 붙임 참조)
    - 신청기간 : '24. 2. 29.(목) ~ 8. 30.(금) 18시
  - **일반트랙**
    - 대상인증 : 1차 사업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1차 사업 신청접수 종료, 2차 사업 5월 공고 예정
- **(문의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 4 수출컨소시엄 사업

- **(사업목적)**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시장 개척 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전시회·수출상담회 등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 촉진
- **(지원규모)** ('24년) 158.5억원, 전국 약 1,300개사 지원
- **(지원대상)**
  -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회, 조합) 및 민간 전문기업 (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우대사항 : 이노비즈, 벤처기업, 여성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동행축제 참여기업, 환변동보험 참여기업 등
- **(지원내용)** 개별 컨소시엄의 ①사전 시장조사, ②현지파견, ③사후관리 3단계로 구성된 해외시장개척 활동의 공통비용 70% 지원



- **(신청접수)** 개별 컨소시엄 행사 일정에 따라 연중 수시모집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해외전시회·수출상담회별 지원기업 모집안내 예정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팀 (☎02-2124-3291~6)

## 5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상시모집

- **(사업목적)** 세계 주요 교역거점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설치·운영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현지화 등 해외진출 관련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
  - \* ①사무공간 제공, ②현지진출 지원 프로그램(전시·상담회, 인증 등), ③현지정착 지원 서비스(멘토링, 글로벌비즈니스지원단 자문)



□ **(운영현황)** 13개국 21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영 중

\* 입주기업 모집은 이 중 20개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광저우GBC 제외)

<입주기업 모집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운영현황>

구 분	미국(4개소)				유럽(2개소)		아시아(6개소)					
	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프랑크푸르트	모스크바	도쿄	호치민	하노이	방콕	뉴델리	알마티
독립실	16	20	10	9	15	8	18	15	15	10	14	7
공유좌석	5	12	8	32	8	8	8	12	6	9	45	6

구 분	중국(4개소)				남미(2개소)		중동(2개소)		합 계 (13개국, 20개소)
	베이징	상하이	충칭	선전	멕시코	산티아고	두바이	리야드	
독립실	17	22	8	10	9	8	15	10	256실
공유좌석	8	14	4	6	2	6	18	45	262석

\* 신청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현지 시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입주기업 선정 (예시) 사우디 리야드는 딥-테크(Deep Tech)기업 우선 선정 등

□ **(지원내용)**

-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에 필요한 복합 사무공간 제공(독립실, 공유 오피스, 회의실, 제품홍보관, 촬영 스튜디오, 상담회장 등)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거점별 다양한 현지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바이어 매칭 상담회, 전시회 참가, 금융·투자, 기술교류, 물류, 인증 등)
- 성공적인 해외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운영(현지화 멘토링, 글로벌비즈니스지원단의 법률, 회계, 노무 등 자문)

□ **(신청기간/방법)** 연중 상시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055-751-9685, 9674~5)

- 현지관련 문의 : 해외 거점별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 중진공 홈페이지 > 지원사업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지역별 연락처

## 6

### 비즈니스지원단 애로상담 및 현장클리닉

- **(사업개요)** 경영·기술지도사, 회계사, 노무사, 관세사, 창업·벤처전문가, 마케팅·수출입 전문가 등 전문인력 Pool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기술 애로를 상시 상담·해결해 드리는 “전문가 자문서비스”
- **(지원대상) 상담 및 현장클리닉 지원대상이 다름**
  - 상담 :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각종 경영·기술상 애로가 있는 자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상담 : 비즈니스지원단(12개 분야별 33명 전문가)이 기업의 경영·기술 애로를 무료상담 지원(전화 및 경남청 방문상담)
  - 현장클리닉 :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은 중소기업 애로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단기간(평균 3일)에 문제 해결 지원
- **(지원비용)** 상담 무료, 현장클리닉 1일 35만원(정부 80%, 기업 20%)
- **(신청방법)**
  - 상담 : 전화(055-268-2546~8, 2594) 또는 방문(경남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 1층 고객지원실)
  - 현장클리닉 : 홈페이지에서(<http://www.smes.go.kr/bizlink>) 신청
- **(문의처)**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창업 주무관(055-268-2594)

## 7

### 기업 규제·애로 상담 및 해소 지원

- **(지원내용)**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개선 수시 상담 및 접수
  - 일반적인 애로사항은 유선 또는 현장방문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처(기관 등)로 규제개선 요구
- **(신청방법)** [경남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Click\)](#)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sujiny119@korea.kr)로 제출

## 8

##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지원규모)** 150억 원, 40,000명 내외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http://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예산소진 시까지

- (세부내용)**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Click\)](#)

- (문의처)** 국번없이1357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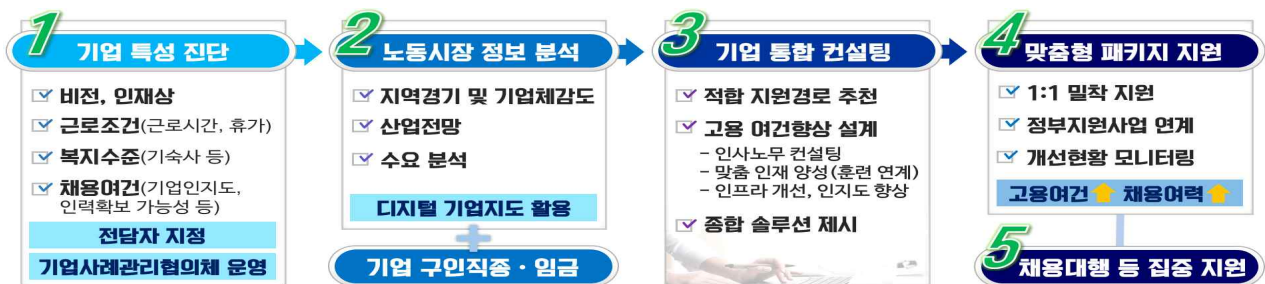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 1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 **(사업개요)** 기업의 여건 및 특성을 진단하고, 고용여건 개선부터 맞춤형 채용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
- **(지원대상)** 창원시 관내 ①근로조건·조직문화 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②근로조건은 양호하나 인지도가 부족하여 홍보가 필요한 기업, ③신속한 채용지원이 필요한 기업, ④다양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맞춤 연계가 필요한 기업
- **(지원내용)**
  - (적극적 진단·컨설팅) 기업 특성, 구인 직종 및 임금·복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업진단
    - \* 기업전담자 지정하여 찾아가는 진단컨설팅 서비스 제공, 애로사항 경청 후 해소방안 마련
  - (맞춤형 지원) 직접 서비스 제공부터 대·내외 지원정책 연계까지 일대일 밀착케어 제공
    - \* 고용여건 개선·맞춤형 채용지원 등을 위한 지원정책 발굴→유관기관 연계·협업 종합서비스 제공→서비스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 단계별 지원내용 >



- **(신청기한)** 상시접수
- **(신청방법)** 유선·방문 신청(창원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 온·오프라인 신청서 제출
  - \* 온라인 신청 링크: <https://forms.gle/5FSDnUkJmTFu9HPK6>
  - \* 서면 신청서: 창원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알림'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처)** 창원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 055-239-0945, 0926, 3543)

## 2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 **(사업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에서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신청자격)**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 (운영계획서 접수일 직전 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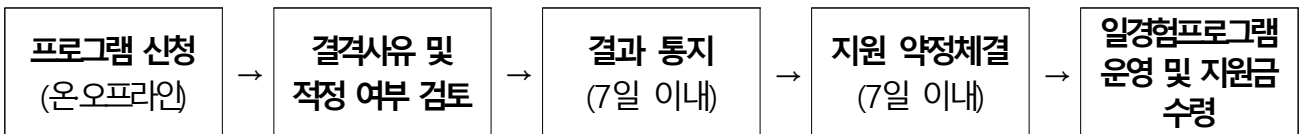
\* (지원제외) 10인 이상 기업이더라도 소비·향락업, 인력공급업·파견업, 임금체불·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내실있는 일경험이 불가하다고 판단 시

- **(지원내용)**

유형	지원기간	기업지원 금액	참여한도
훈련연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개월</li> <li>• 1일 4~8시간</li> <li>* 취업관련 교육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운영수당)</li> <li>1인당 1개월 최대 5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계획서 접수일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40%</li> </ul>
체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일</li> <li>• 1일 3~4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멘토링수당)</li> <li>1인당 1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계획서 접수일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40%</li> </ul>

\* 일경험 참여자는 현장실습생(수련생) 이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참여자에 대해 재해보험을 가입 (4대보험 미가입)하며, 참여자 및 참여기업에 대한 수당은 고용센터에서 지급(기업부담 없음)

- **(참여절차)**



-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http://www.kua.go.kr)) 온라인 신청,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 통해 신청 가능

- **(문의처)** 창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055-239-5372)

마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055-259-1575)

### 3 고용유지지원금(유급)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 기준달

- ①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 ②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추세

\* 매출액은 세금계산세 매출액, 신용카드, 현금, 수출금액 합산(국세청 증빙자료 제출)

#### □ (지원요건)

##### ○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의미

- ①휴업 : 고용유지 조치일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총 근로시간이 20% 초과 단축
- ②휴직 :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 ○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수당

- ①휴업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

\* 평균임금의 70%이상 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

\*\*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가능

- ②휴직 :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금액 지급

#### □ (지원내용)

구분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지원 2/3</li> <li>· 대규모 1/2 또는 2/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지원 및 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li> </ul>
특별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지원 9/10</li> <li>· 대규모 2/3 또는 3/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지원 1일 7만원 (연 180일)</li> <li>· 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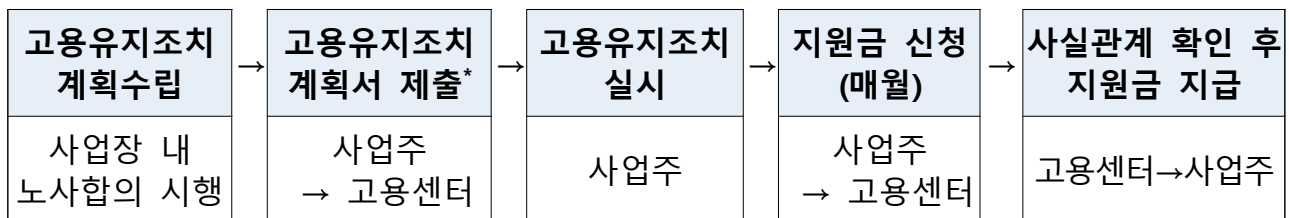
\*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 기간동안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지원제외)

- 고용유지조치 기간 + 1개월간 당해 사업장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
  - 감원방지기간 내 폐업할 경우 해당월의 지원금 부지급
-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 ② 계획 신고 당시 해고 예고된 자 및 퇴직 예정자
  - ③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및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④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동거친족, 등기이사(감사 포함)
  - ⑤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타사 취업 또는 일용근로한 자
  - ⑥ 당해 사업장 입사(고용보험 가입)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⑦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예술인 및 단기예술인
  - ⑧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단기)노무제공자

□ (세부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시행공고(Click)

□ (지원절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실시 하루 전까지 신고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 4

##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사업개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장려금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대상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 단,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
    - \* 단, 고졸 이하 학력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요건)**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총 **720만원**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최대 1,200만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 보험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지원절차)**

참여신청 및 승인 협약체결 (기업⇄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기업⇄청년)	⇒	(6개월 고용유지)	⇒	장려금 신청 (기업→운영기관)	⇒	장려금 심사·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	---	-----------------------------	---	---------------	---	---------------------	---	---------------------------
- **(참여신청)**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http://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 5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사업개요)**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년 고용 촉진 및 고용연장 도모
- **(지원요건)** 정년을 시행 중인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 ①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현행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근로자를 재고용(재고용)
  - 재고용의 경우 정년 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원 일률적 재고용이 원칙
- **(지원내용)**
  - (지원금액) 계속 고용 1인당 분기 90만원(월 30만원) 지원
  -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 \* 단,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인 이하인 경우는 3명
  - (지원주기) 지원대상 근로자별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 3년
- **(지원제외)**
  - 2019년1월1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업주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입사하여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월 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자
  - 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
- **(지원절차)** ① 계속고용제도 도입(사업주) ⇨ ② 지원금 신청(1년 이내, 분기 단위) ⇨ ③ 장려금 검토·지급(고용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 6

## 고령자고용지원금

- **(사업개요)** 급격한 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 대비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신속한 취업 촉진을 위해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 단,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 ①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지급)한 분기의 시작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② (고령자 수 증가)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
    - \*\* 사업적용기간이 4년 미만 ~ 2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 **(지원내용)**
  - (지원수준)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 30만원”을 지원금 최초 지급한 분기를 기준으로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최대 한도 30명)
    - ※ 월평균 피보험자수 10인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
  - (지원제외) 사업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근로자,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인 자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 **(사업개요)**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간접노무비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본인의 필요에 의해(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근로자 요건) ① 근속기간 6개월 이상 ②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③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단축제도)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
  - (근태관리) 단축 근로자의 출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  
\* 출퇴근 시각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제3자가 대리 등록하는 경우 지원불가
  - (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임신 사유는 2주이상)
  - (지급제한) ①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②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

□ (지원내용)

- (지원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20만원)과 간접노무비(월 30만원)를 합하여 월 최대 50만원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20만원 지급
  - \* 사업주 보전액: 사업주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시간비례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임금액
  - (간접노무비) 단축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지급
-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지원
  - \*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기간(최소 1개월 이상)에 한하여 지원
- (지원인원)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10인 미만 3명, 최대 한도 30명)
- (지원금 산정)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단위 산정, 활용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하는 달은 단축 활용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 지원
- (지원 주기) 3개월 단위

- (지원절차) ① 전환제도 도입·운영(사업주) ⇨ ② 전환(단축)근로자 발생(근태관리)및 임금 지급 ⇨ ③ 온라인 지원금 신청(3개월단위, 사업주) ⇨ ④ 지원요건 검토 및 지급(고용센터)

□ (세부내용) 위라벨일자리 장려금 시행공고(Cl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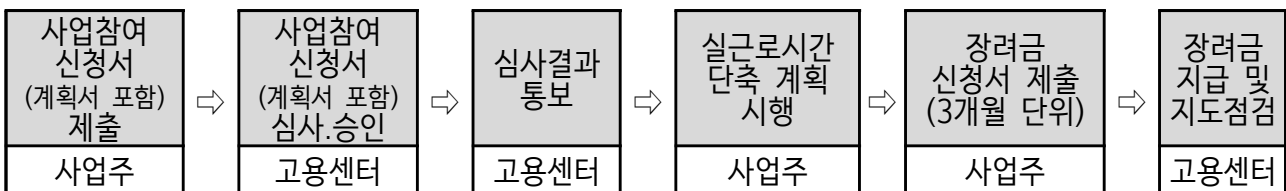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 (사업개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 실근로시간은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방식) 공모형



- (지원요건) 기존 실근로시간 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근로자 1인당 초과근무시간 등 장시간 근로 현황, 단축 목표 시간 및 시행일, 구체적인 단축 계획(교대제 개편, 연장근로 관리방안, 연차제도 활성화방안 등), 향후 지속 방안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㉞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㉟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 출퇴근 시각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제3자가 대리 등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지원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

- (지원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 근로자 각각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해야 하는 것이 아님  
⇒ 일감나누기(work sharing) 등을 통해 기업의 평균 근로시간을 줄여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
- ✓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 (문 의 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9**

**일 ·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유연근무제)**

- **(사업개요)** 유연근무제\* 활용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b>선택근무제</b>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b>재택근무제</b>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b>원격근무제</b>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b>시차출퇴근제</b>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유형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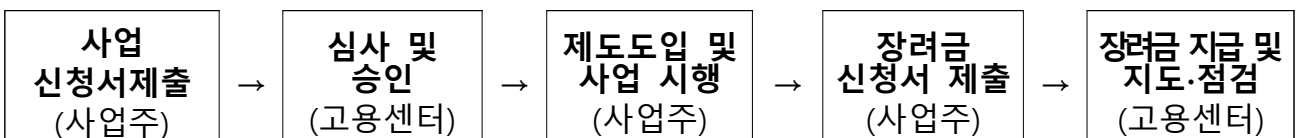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 심사·승인 ② 제도도입 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③ 전자·기계적 방식에 의한 근태관리 ④ 재택·원격 근무일,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에 연장 근무가 없을 것
- **(지원내용)** 지원대상 근로자별 최초 지원일로부터 1년간 최대 360만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월 6일~11일 활용	월 12일 이상 활용	
재택·원격근무제	15만원	30만원	360만원
시차출퇴근제	10만원	20만원	240만원
선택근무제	30만원 (월 2시간 이상 단축 4회 또는 30분 이상 단축 8회 이상)		360만원

\*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최대 70명 지원 (모든 유형 합산)**

\*\* 육아기 자녀를 둔 경우 10만원 추가 지원

- **(지원절차)** <공모형>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 10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사업개요)** 구직등록 기관 및 요건에 따라 구직 등록을 한 자로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지원요건)**
  - ①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 등록을 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 [붙임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조
  -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등
  
- **(지원내용)**
  - 신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대규모기업 360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주기)** 고용한 날부터 6개월마다 지급(월할 지급하지 않음)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를 지원(10인미만 3명)
  - **(지원제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소속 (全)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등
  
- **(지원절차)**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사업주) ⇨ ②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③ 장려금 신청(6월 단위, 사업주) ⇨ ④ 지원요건 검토 및 지급(고용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 **(사업개요)**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지원대상)**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 단,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등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육아휴직지원금
    - 육아휴직기간 월 30만원
    - 특례\* 적용시 월 200만원(첫3개월에 한함)
    - \* 만12개월 미만의 자녀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월30만원
    - 인센티브\* 적용시 월40만원
    - \* 사업장 최초~3번째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 (지원제외)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인 자
- **(신청기한)**
  - (제척기간)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창원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참고

- **(사업개요)** 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등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지원대상)** 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 단,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등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지원기간)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 사용한 기간
  - (지원수준)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 한도
    - \* 1개월지급액 최대 80만원, 인수인계기간중 1개월 지급액 최대 120만원
  - (지원요건) 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제도 종료 후 원근로자를 1개월이상 계속 고용
  - (지급제한) 감원방지기간\* 준수
    - \* 대체인력채용일 기준으로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제외)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인 자
- **(신청기한)**
  - (제척기간) 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창원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참고

- **(목적)**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지원대상)**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정보 비대칭 및 담보 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기업
  - 고용 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 투자 기업, 혁신 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중점  
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 \* 초격차·신산업 분야
  - 지역주력산업
- 뿌리산업, 뿌리기술
- 소재·부품·장비산업

\* 경남 지역주력산업 : 첨단 정밀기계, 첨단 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지역주축산업),  
 경남 지역 미래신산업 : 소형모듈형원자로(지역 단독형), 수소 저장·운송(지역협력형)

- **(지원규모)** 융자(4조 4,632억원), 이차보전(9,243억원)

\* 고금리 시기 중소기업 이자 부담 완화 및 정책자금 재원 한계 보완을 위해 이차보전 지속 공급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기간 : '24.3.25~5.31

**【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

(단위 : 억원)

구분	지원목적	지원규모
혁신창업사업화	창업 및 특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	19,958
신시장진출지원	수출 중소기업 육성	4,174
신성장기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17,250
재도약지원	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대응	5,318
긴급경영안정	재해 및 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	1,500
밸류체인안정화	단기 생산자금 공급 및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1,375

- **(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융자 신청
- **(세부내용)**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Click\)](#)
- **(문의처)**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2 | 내일채움공제

□ **(사업개요)** 핵심인력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촉진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청년이 매월 일정액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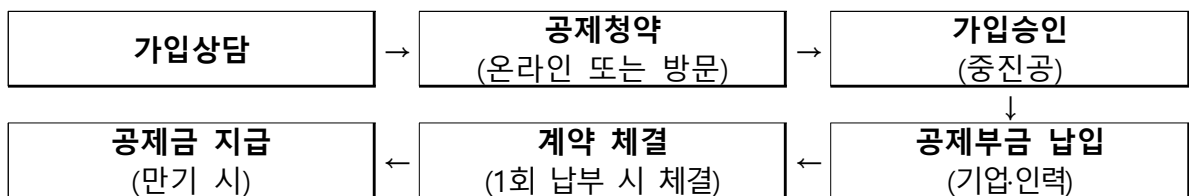
□ **(가입대상)**

-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인력)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나이, 재직기간 무관)

□ **(가입조건)**

-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5년
- (적립금액) 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매월 34만원 이상\*  
\* 「기업:인력 = 2:1 이상」의 비율로 납부
- (지급이율) 연 복리(분기별 변동금리,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게시)

□ **(사업절차)**



□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공식 홈페이지(www.sbcplan.co.kr)에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제계약 청약 신청

□ **(문의처)**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1588-6259)

### 3 기업인력애로센터

- (사업개요)** 구인구직, 직무역량 향상, 맞춤형인력 양성, 근무환경 개선, 인력제도 개선, 정보제공 등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는 인력양성사업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기업인력애로센터에 등록된 구인기업의 인력매칭, 제도 개선, 직무역량 향상교육 등을 제공하는 ONE-STOP 지원체계

구 분	주요 내용
청년구인구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대상으로 특성화고, 전문대학, 직업전문학교 등 인력양성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상시 매칭
직무역량향상	- 중소기업연수원, 고용부 HRD-Net 등 직업훈련기관 및 민간교육기관과 연계
맞춤인력양성	- 특성화고 인력양성, 기술사관, 산학맞춤인력양성사업, 계약학과 등과 연계
근무환경개선	- 기업진단, 컨설팅사업과 연계하여 근무환경 종합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인력제도개선	- 법규, 제도 등 규제사항을 중진공 인력지원처를 통해 대정부 건의
정보 제공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인력지원 시책 연계

- (신청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중진공 지역본부 방문 신청 및 기업인력애로센터 홈페이지 (job.kosmes.or.kr) 온라인 신청
- (세부내용)** 기업인력애로센터 홈페이지(Click)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1899-3001)



- **(사업개요)** 중소기업 CEO 및 재직자의 신기술, 현장실무능력 등 전문 역량 향상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재를 육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 중소기업 취업대상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임직원
- **(지원내용)** 기술, 정책분야 등 다양한 교육영역, 교육방식의 연수과정 제공

## 【 '24년 5~6월 직무역량향상연수(집합연수) 일정 】

구분	과 정 명	연수비	기 간
경영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과정	330,000원	5/22~24
	직무태도 향상 및 마인드 변화	330,000원	5/29~31
	온라인 매출 향상을 위한 스마트스토어 활용 전략	242,000원	6/10~11
	[공통]성과향상을 위한 팀워크 재구축	242,000원	6/17~18
품질	[공통]사례로 배우는 현장혁신 노하우	242,000원	5/20~21
	공정 불량 ZERO 달성을 위한 시스템적 관리	242,000원(비환급)	5/23~24
	엑셀을 활용한 품질데이터 분석과 관리	330,000원	5/27~29
	Q.C.D 문제해결 실무	330,000원	6/12~14
	스마트공장의 표준시간관리를 통한 낭비개선	242,000원	6/20~21
	[공통]품질코스트(Q-COST) 분석 및 활용	242,000원	6/27~28
디지털 산업 및 생산 기술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무료	5/20~22
	스마트공장 데이터분석을 위한 파이썬 중급과정	무료	5/23~24
	재고관리 고도화 및 스마트화	253,000원	5/27~28
	정밀측정 기술 실무	341,000원	5/27~29
	엑셀과 Power BI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무료	5/29~31
	스마트공장 설비, 측정시스템 평가방법 및 문제해결	무료	5/30~31
	스마트 제조시스템의 이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실무	253,000원	6/3~4
	[공통]PLC 통합 제어 실무(서보모터+HM+통신네트워크+협동로봇)	무료	6/3~5
	[공통]전기전자회로 입문	341,000원	6/12~14
	[공통]스마트공장 구축 및 추진실무	무료	6/17~19
	스마트공장 탄소중립 실천과 ESG 공급망 실사 대응전략	무료	6/24~25
	AutoCAD 2D 설계 입문	440,000원	6/25~28
스마트공장을 위한 도입/고도화 전략수립	무료	6/26~28	

【 `24년 5~6월 직무역량향상연수(웨비나-온라인연수) 일정 】

과정명	세부내용	일정
[웨비나]미래모빌리티 산업 (전기차, 수소차 등) A to Z	- 미래모빌리티 산업 개요 - 미래모빌리티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적용	2024.05.29.(수) 13:00~17:00(4H)
[웨비나]스마트공장을 위한 파이썬 속성코스	- 파이썬 기초문법 이해 - 파이썬 데이터 처리(엑셀, 데이터베이스) - 파이썬 GUI&Visualization	2024.06.12.(수) 13:00~17:30(4.5H)
[웨비나]미래신기술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 블록체인 기술 개요와 동향 - 생성형 AI 기술 개요와 활용	2024.06.26.(수) 13:00~17:00(4H)

- (신청방법)** 중소기업연수원 홈페이지(<https://sbti.kosmes.or.kr>) 온라인 신청
- (할인제도)** 연수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적용대상 및 절차	할인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2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수도권이외지역)	30~50
신규과정	30
내일채움가입자, 인재육성형 기업, 여성기업 등 정책연계	30~50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협약기간 내)	30~50

- \* CEO명품아카데미 과정은 할인가준 적용에서 제외
- \* 연수비 할인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세부내용)** 중소기업연수원 홈페이지(Click)
- (문의처)** 부산경남연수원 신기술연수팀(055-548-8045~6)

## 1 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2분기 접수 개시

□ (접수기간) '24. 4. 1.(월) 9:00~ (예정)

□ (접수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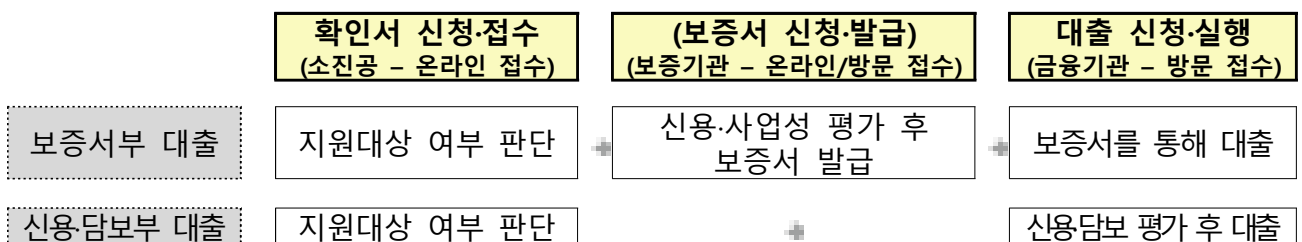
세부자금명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일반자금	업력 무관 소상공인	기준 +0.6%p	7천만원	5년(2년거치)
긴급경영 (일시적경영애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기준금리	7천만원	5년(2년거치)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 기업 소상공인	2.0%	1억원	7년(2년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기준금리	7천만원	5년(2년거치)
소공인특화자금(운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기준 +0.6%p	1억원	5년(2년거치)
소공인특화자금(시설)			5억원	8년(3년거치)

\* 정책자금 기준금리 : 3.89% ('24.1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 상세 지원내용은 안내자료 참고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용자 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 \* 재해자금은 대출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 진행절차



□ (문의처) 중소기업 콜센터(1357)

## 2

## 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2분기 접수 개시

□ (접수기간) '24. 4월 중 공고 예정

□ (접수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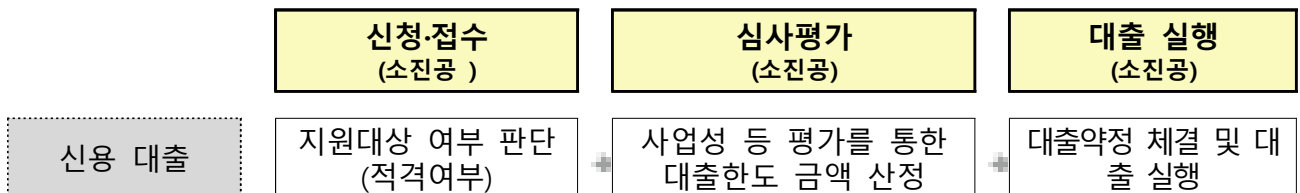
세부자금명	대상	금리	한도	기간
혁신성장촉진자금 (~3.22 조기마감)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인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등	기준+0.4p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운전 5년(2년거치) 시설 8년(3년거치)
	(일반형)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등	기준+0.4p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용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기준+0.4p	5억원 이내	8년(3년거치)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저신용(NCB 744점이하) 소상공인	기준+1.6p	3천만원	7년(2년거치)
재도전특별자금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최근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재창업교육(50h) 이상 ②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융자지원 업종에 해당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기준+1.6p	7천만원	5년(2년거치)

\* 정책자금 기준금리 : 3.89% ('24.1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 상세 지원내용은 안내자료 참고

□ (용자 신청·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

- 결정 절차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용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실행 절차



□ (문의처) 중소기업 콜센터(1357)

**3**

**24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소상공인 모집 공고**

- (지원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경영교육 및 업종전문 교육지원으로 성공적인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유도
- (지원대상)** 재창업 및 업종전환 의사가 있는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20년 1월 1일 이후 폐업
- (신청기간)** 공고일 ~ 2024. 10. 30
- (지원내용)** 재창업 준비를 위한 경영 기초교육 및 업종별 전문교육 등

세부사업		주요 내용
재창업 교육	기초교육 (10H)	■ 아이템 선정, 마케팅, 홍보전략 등 재창업 성공을 위한 기초교육 제공
	업종전문교육 (40H)	■ 도소매, 음식업, 서비스업 등 주요 업종별 전문교육 제공

- (신청자격)**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 ▶ '20년 1월 1일 이후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주의사항 참조)
-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주의사항 참조)
-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운영기간이 60일을 초과한 사업체의 대표

-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 교육과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검토 후 순차적 등록 예정

- (지원규모)** 총 4,000건 내외

- (지원내용)** 재창업 교육 및 연계지원  
\* 연 최대 2회 교육수강 가능(단, 같은 과정에는 중복참여 불가)

**< 재창업교육 수료생 대상 연계지원 >**

- ▶ 재창업 사업화 가점 부여  
- 사업화 가점 :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년도 기준 2년 이내 재창업교육 수료 시 가점 5점 부여
- ▶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연계  
-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대상 중 '재창업 준비단계' 해당  
(자세한 내용 및 접수는 정책자금(<http://osl.semash.or.kr>) 통해 확인)

- (문의처)**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1800-5981)

## 1 투자연계보증 지원제도

## □ (취지)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의 일환으로서 기획재정부 위탁 기후대응보증사업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기여기업 보증지원 제도 마련
-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평가하는 '탄소가치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탄소중립 기여업체를 선별·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 경영 확산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자체 감축기업, 외부감축기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유형별 대상채무 및 평가방법 차등화

【탄소감축유형별 탄소감축분야 및 정의】

탄소감축유형	탄소감축분야	정 의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양광</li> <li>바이오</li> <li>연료전지</li> <li>수력</li> </ul>	「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하는 기업
②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li> <li>풍력</li> <li>기타</li> </ul>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거나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③ 자체감축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도입</li> <li>수송수단 도입</li> <li>연료전환</li> <li>기타</li> </ul>	시설도입(교체), 연료전환, 수송수단 도입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감축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④ 외부감축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완제품</li> <li>소재(원료)</li> <li>부품</li> <li>기타</li> </ul>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기술 사업화 및 제품·부품·소재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신기술사업자

-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100억원 한도(기금 타계정 보증금액, 신보 보증금액, 보증재단 보증금액 포함)
- (운전자금 가산) 탄소가치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지원

온실가스 감축 소요자금 (운전자금 소요자금 산정금액)	+	탄소가치 산출액	=	보증가능금액
----------------------------------	---	----------	---	--------

□ **(우대사항)** 기업유형, 평가유형 등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적용

- **(장기·고액보증)** 본 보증 지원전에 대해서는 장기·고액보증 감축 대상 및 보증일부 해지 대상에서 제외, 보증료 가산 적용 배제
- **(보증금액 산정 특례)**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보증금액 2억원 이하 산정 생략
- **(보증료 감면)** 탄소감축분야별 감면 적용하되 중복적용 배제하고, 외부감축기업 및 자체감축기업의 경우, 탄소감축 기여등급에 따른 탄소 스프레드를 적용하여 보증료 감면 차등화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산업기업	외부감축기업, 자체감축기업		
	탄소감축 기여등급(CR등급)*		
	CR10등급	CR5~CR9등급	CR1~CR4등급
△0.2%p	△0.2%p	△0.3%p	△0.4%p

- **(보증비율)** 탄소가치 산출 여부에 따라 보증비율 차등 적용(90%~95%)

탄소가치 미산출	탄소가치 산출(표준·심층평가)
90%	95%

□ **(지원계획)** '24년도 신규공급계획 6,000억원

□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1544-1120) 및 영업점

□ 혁신성장분야 지속 지원을 위한 보증공급 규모 유지

- 정부정책 뒷받침을 위해 일반보증 공급 규모를 전년과 동일한 61.0조원으로 유지하여 경제회복 및 지속성장지원 기반 마련

< '24년도 일반보증 운용 계획 >

(단위: 조원)

구 분	'23년		'24년 계획 (B)	증감 (B-A)
	계획(A)	실적		
보증총량	61.5	61.8	61.8	0.3
보증공급	61.0	61.1	61.0	0
신규보증	12.0	12.1	12.0	0

☞ '24년 경남지역 신규보증은 신보 신규보증의 7% 수준으로 계획

□ 중점정책부문 공급 확대 운용

- 창업·수출·주력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新성장동력, 일자리활성화 지원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

< '24년 보증공급 계획 >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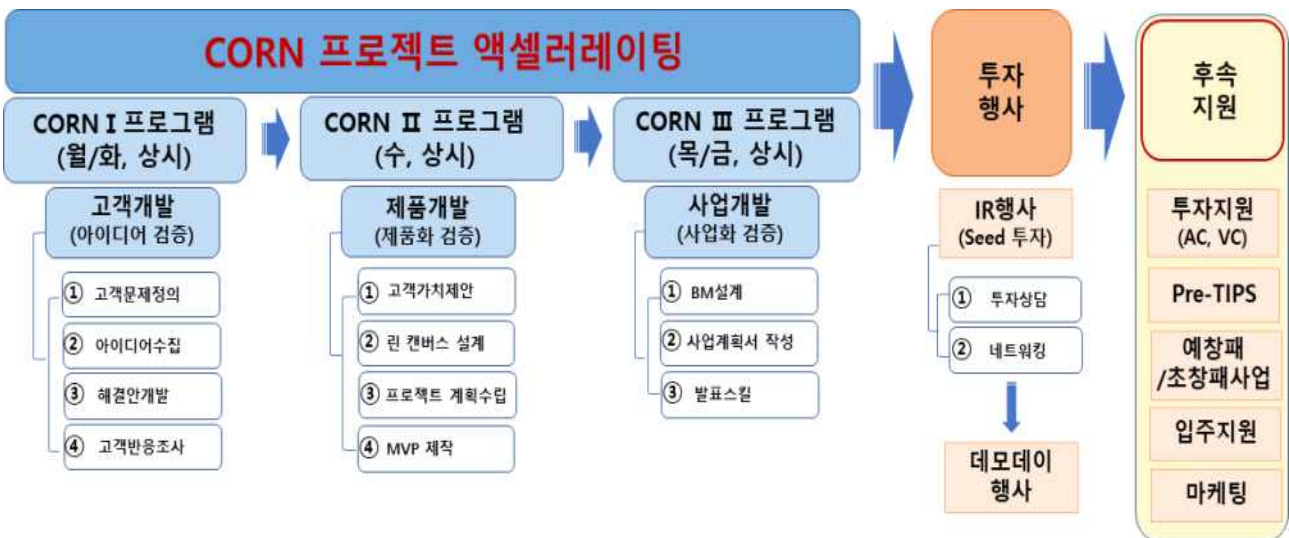
구 분	'23년		'24년 계획(B)	증감 (B-A)	
	계획(A)	실적			
중점정책부문	53.1	67.3	57.0	3.9	
경제 기반 강화	창업기업	19.0	21.1	19.5	0.5
	수출기업	14.1	15.0	14.5	0.4
	주력산업	4.0	4.8	4.0	-
	소 계	37.1	40.9	38.0	0.9
경제 활력 제고	新성장동력	10.0	16.8	12.0	2.0
	일자리활성화	6.0	9.6	7.0	1.0
	소 계	16.0	26.4	19.0	3.0

□ 유동화회사보증 13.9조원, 기타 위탁보증 10.6조원 별도 운용 계획



-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프로그램)** 19.5조원 지원계획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예비창업, 신생기업, 창업초기, 창업성장 및 유망청년창업기업보증 등
-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14.5조원 지원계획
  - 수출기업의 수출역량 단계에 따른 맞춤형 보증 지원
    - 수출희망-수출진입-수출확장-수출주력-수출스타기업으로 분류
- **(주력산업 지원 프로그램)** 4조원 지원계획
  - 10대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 \* 10대 주력산업 :자동차(C30), 화학(C20), 조선(C311), 디스플레이(C2621), 반도체(C261), 철강 제조(C241), 철강 주조(C2431), 바이오(C21), 배터리(C282),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C2927)
-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12조원 지원계획
  - 신성장동력 46개 분야, 284개 품목 관련 기술보유 및 생산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 **(일자리 활성화 보증지원 프로그램)** 7조원 지원계획
  - 고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상품 지원
    -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의 질 우수기업 등에 대한 보증
- **(문의처)** 인근 영업점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http://www.kodit.co.kr))

- (사업목적) 창업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 (모집대상)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 (지원혜택) 아이디어 검증, 전문가 멘토링, 투자행사 참여 등
- (지원내용) 아이디어 사업화 검증, 제품 및 사업개발 창업역량강화
  - CORN I 프로젝트 : 고객개발(아이디어 검증)
  - CORN II 프로젝트 : 제품개발(최소기능제품 확인)
  - CORN III 프로젝트 : 사업개발(사업화 검증)
- (신청기한) 2024. 1. ~ 12. (※기간 내 상시 모집)
- (운영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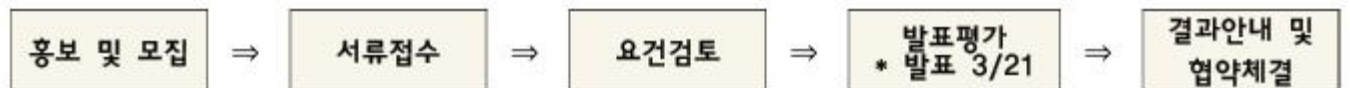


- (세부내용) CORN 프로젝트 홈페이지 참조 ☞ [www.kcorn.kr](http://www.kcorn.kr)
- (문의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액셀러레이션본부(☎055-291-9314)
- (참고사항) 기관·기업·학교 등에서 요청 시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CORN 프로젝트” 운영 가능

## 2

## 2024 경남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 (사업목적)** 지역 내 청년 창업가 지원을 위한 사무공간 지원
- (모집대상)** 입주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3년미만)
- (지원혜택)** 경남센터사업연계지원 및 3층 오픈스페이스 공간 지원 등
- (주요내용)** 입주공간, 회의실 인터넷 전용회선, 사무용품 등 무상지원
- (신청기한)** 2024. 2. 20. ~ 수시 모집
- (운영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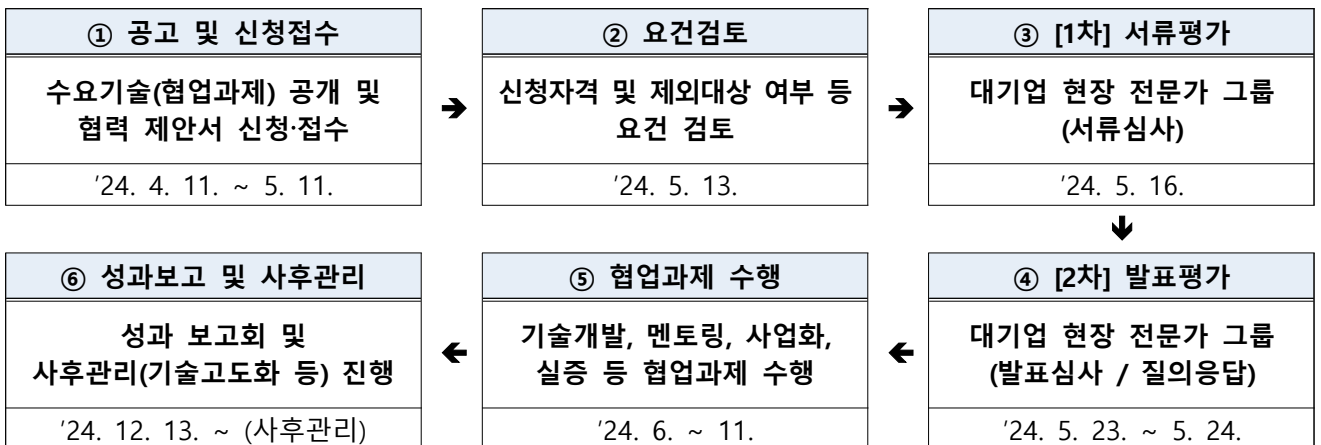


※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

- (세부내용)**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문의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액셀러레이션본부(☎055-291-9318)
- (참고사항)** 경남지역 내 만 39세미만 청년 예비창업자, 창업3년 이내 기업 지원

## 두산에너지 × 스타트업 상생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2024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 (사업목적)** 대기업-스타트업이 협력파트너 발굴 등 최적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활발한 협업과 상호 시너지 극대화를 유도하고,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한 동반성장 도모
- (모집대상)**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 (지원혜택)** 창업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사업화자금지원 등
- (선정규모)** 총 10개사(팀) 내외
- (신청기한)** 2024. 6. ~ 12. (6개월간)
- (추진절차)**



※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세부내용)**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문의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이노베이션 담당자(055-291-9372)
- (참고사항)**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 1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 (사업개요)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 (지원대상) 경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 (지원규모) 2,000억원
- (지원내용)

계	경영안정	창업		명절	희망두드림
		일반	교육수료		
2,000	1,300	150	50	200	300

\* 창업 및 경영: 1월~10월 월 별 배정

- (신청기한) 자금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보증상담예약
-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

## 2 재창업 특례보증

- (사업개요)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인해 폐업한 사업자 중 재창업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①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 ②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을 전환한 기업

- **(지원규모)** 전국 1조원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본 건 1억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보증비율 : 100%, 보증료율 연 0.5%(고정)
- **(신청기한)** 자금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보증상담예약
-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

동 자료는 무역보험 관련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완전성 및 법률적 책임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아니므로 개별사안에 대한 K-SURE 앞 구체적 문의 없이, 이 자료의 내용만을 적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수출 초보기업 지원강화

- (사업개요)** 수출 초보기업 중점육성 및 수출역량 강화, 수출창업 및 벤처활성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한 보증·보험 한도 확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
- (신청자격)**
  - 산업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당해연도 참여 기업
  - 수출실적 U\$100만 이하 기업(최근 1년 또는 전년도)
- (지원내용)**
  - 수출이행자금(선적전 보증)·수출채권유동화(선적후, 매입 보증) 한도 우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
  - 수입자 신용조사보고서 무료 제공(5회)
- (기타사항)** 공사 내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거절 가능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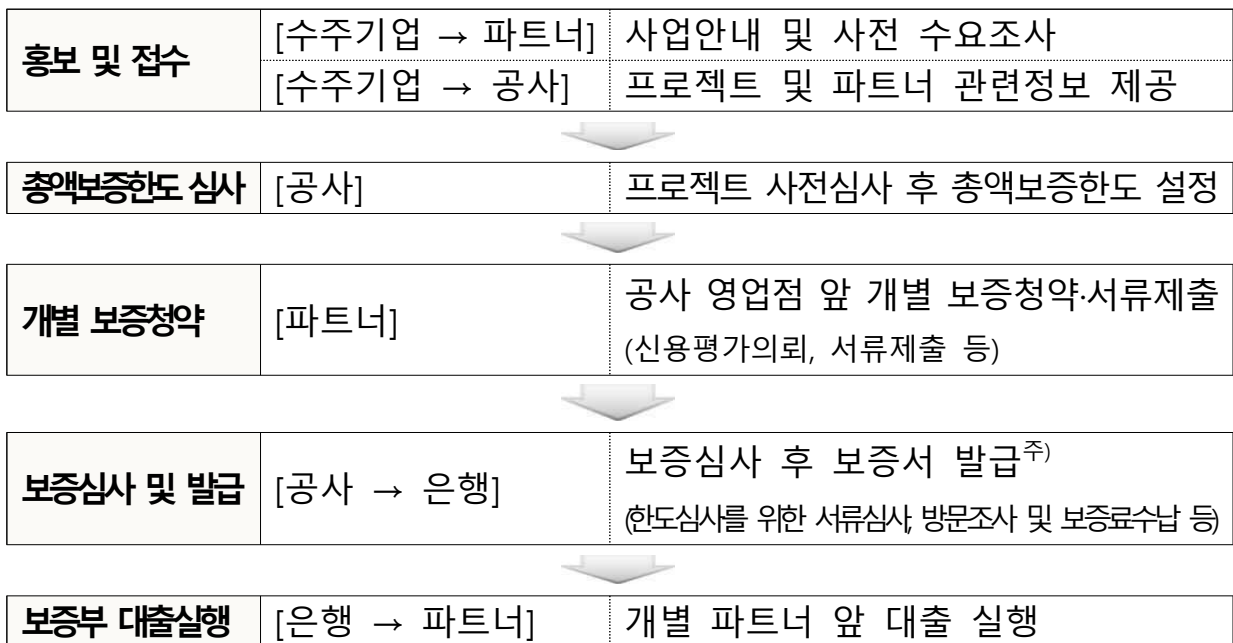
## 2 수출이행자금 기존 보증 건 무감액 연장 실시

- (사업개요)** 코로나19 지침 종료 이후, 연착륙을 위하여 2025년 9월까지 무감액 연장 실시
- (신청자격)** 기존에 공사 선적전 보증서를 이용 중인 수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수출이행자금 지원(기존 선적전 보증) 무감액 기간연장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0)

### 3

## 방산 협력사를 위한 수출파트너보증제도 운영

- **(사업개요)** 방산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 참여 협력사(파트너) 앞 다수의 개별보증을 신속·간편 제공
- **(신청자격)** 우량 수주기업이 발급한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를 수취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보증한도) 계약금액 기준으로 적정한도 산출, 최대 30억원(중견 40억원)
  - (심사 간소화) 기존 보증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및 심사항목 일부를 생략·간소화하고, 본점의 별도 심사 없이 영업점에서 신속 발급
  - (심사 프로세스)



주) 공사 내부규정에 따른 보험(보증)금지·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제한

- **(신청기한)** 수출 프로젝트 심사 이후 상시 운영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 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0)



## 4 | 환변동보험제도 운영

- (사업개요)**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
- (신청자격)** 수출 및 수입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제도특징) 저렴한 비용으로 최장 3년 6개월까지 환리스크 헷지 가능
  - (대상기업) 신용상 문제가 없는 국내기업
  - (대상통화) USD, JPY, EUR, CNY
  - (보험한도) 수출입실적, 기업신용도 및 실행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책정

### 【 환변동보험의 종류 】

구 분		세 부 내 용
일반형 선물환	수출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율하락 : 공사→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li> <li>■ 환율상승 : 보험계약자→공사에 이익금 납부</li> </ul>
	원자재수입거래 (수출원자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율상승 : 공사→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li> <li>■ 환율하락 : 보험계약자→공사에 이익금 납부</li> </ul>
옵션형 (이익금 납부 의무 없음)	부분보장 옵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율하락 : 통화당* 80원까지 보험금 지급</li> <li>■ 환율상승 : 이익금 납부 면제</li> </ul> <p>* JPY는 100엔당</p>
	완전보장 옵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율하락 : 환차손 전액 보험금 지급</li> <li>■ 환율상승 : 이익금 납부 면제</li> </ul>

- (신청기한)** 상시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0)

**5****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제도 운영**

- (사업개요)**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
- (신청자격)** 수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제도특징) 1개의 보증서로 다수 수입자와의 거래 모두 담보
  - (보증대상)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 (대상거래) 통관수출거래에 대한 매입외환 180일 이내 대출
  - (보증한도) 최대 U\$700만(U\$10만 이내 책정 시 간편 심사)
    - \* 휴·폐업 기업, 세금·4대 보험료·금융기관 등 연체기업, 신용등급 불량 기업 등은 보증한도 책정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한)** 상시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보증료 지원)** 하나, 국민, 우리, 신한, 경남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은행 추천기업 앞 포괄매입 보증료 지원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0)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원부자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수입자금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받은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 하는 경우 공사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 정부선정 소부장, 뿌리산업, 방위산업 관련 제조, 혁신제조업체
- (지원내용)**
  - (제도특징) 보험계약기간(1년)내 별도의 통지 없이 사용가능
  - (보험대상) 공사 등급 E이상 제조기업
  - (대상거래) 대출기간 1년 이내의 수입자금 대출계약
  - (보험한도) 수입실적, 재무자료 등 공사 내부규정 감안 산출
    - \* 휴·폐업 기업, 세금·4대 보험료·금융기관 등 연체기업, 신용등급 불량 기업 등은 보험한도 책정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한)** 상시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0)

- (사업개요)** 별도의 수출통지 절차나 수입자 신용조사 없이 보험계약 기간동안 발생한 보험계약자의 모든 정상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는 비대면 간편 보험제도
- (신청자격)** 수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제도특징) 비대면가입 및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으로 신속한 가입
  - (보험대상) 공사 신용등급 G급 이상(특례 G급 제외)기업 중 직수출 실적 U\$50백만 이하 기업
  - (대상거래) 결제기간 1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 중계무역거래
  - (보험한도) 개별수입자 당 최대한도 U\$10만(기업 최대 한도 U\$20만)

\* 기존 공사의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와 중복이용 제한
- (신청기한)** 상시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0)

- (사업개요)** 수출 중소기업이 은행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보증부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은 공사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서 담보로 대출 실행
- (신청자격)** 수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제도특징) 은행 플랫폼 및 대외정보연계망 활용을 통한 보증심사 자동화
  - (지원종목)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지원대상) 한국평가데이터(KoDATA) 등급 B+이상 기업 중 매출액 1억원 초과 100억원 미만 및 수출실적 U\$1만 이상 U\$200만 미만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 (보증한도) 5천만원 또는 1억원(KoDATA등급이 BB+이상인 경우 1억원 선택 가능)
    - \* 휴·폐업 기업, 세금·4대 보험료·금융기관 등 연체기업, 신용등급 불량 기업 등은 보증 한도 책정이 제한될 수 있음
    - \*\* 보증취급은행 : 신한은행, 하나은행
- (신청기한)** 상시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0)

## 9

##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 (사업개요)** 지자체 지원을 통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및 단체 보험 운영
- (신청자격)** 경남지역 내 본사 또는 지사(공장)을 두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보험료 지원사업 강화) '24년도 지자체 지원예산 확보를 통한 수출 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 (단체보험 운영) 경남도청, 중진공 경남지역본부 등 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U\$5만 이내에서 보상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0)

## 1 OK FTA 컨설팅

- (사업개요)**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기업에 맞춤형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관리 능력배양과 FTA 활용 능력 제고
- (신청자격)** 대기업을 제외한 경남 지역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 \*\* 직전 2년 내 (22~23)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
- ※컨설팅 품목 및 적용 협정 확인 결과
- ① 신제품 개발에 따라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 추가되는 경우,  
② 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FTA 협정(RCEP,이스라엘 등)에 대한 적용 분석 및 판정이 추가될 경우 허용
- (지원규모)** 연간 110개사 내외
- (지원내용)**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 FTA협약 상대국에 수출중이거나 수출하려는 기업의 원산지관리,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등 지원

## &lt;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유형 &gt;

유형		컨설팅 내용	지원MD
종합*	A	종합 컨설팅 (품목수 4개 + 추가 2개)	6~10일 (필수 6+선택 4일)
기초**	B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컨설팅 (품목수 2개 + 추가 1개)	2~5일 (필수2일+선택3일)
	C	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품목수 2개 + 추가 1개)	2~5일 (필수2일+선택3일)

\* 종합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및 관리시스템 도입 등 필수 컨설팅 외 품목추가 컨설팅, 업체·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 기초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등 필수 컨설팅 외 품목추가 컨설팅,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b>기업 분담금</b>	<p>컨설팅 총액 200만원 이상시 전년도('23)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분담 :</p> <p>① 50억원 이하 : 기업분담금 없음</p> <p>② 50억원~1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10%</p> <p>③ 100억원~5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20%</p> <p>④ 500억원~1,0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30%</p> <p>⑤ 1,000~1,5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40%</p> <p>⑥ 1,500억원 이상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50%</p> <p>※ 기업분담금은 컨설팅 총액 기준으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매출액별 비율을 곱한 금액 예시)컨설팅총액 250만원, 부담률 10%일 경우 5만원으로 계산</p>
-------------------	---

- (신청기한)** 2024년 3월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okfta.kita.net](http://okfta.kita.net))에서 온라인 신청
- (세부내용)**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Click\)](#)
- (문의처)**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 박예진 원산지관리사  
(TEL. 055-210-3048/ E mail. [gnfta@cwcci.or.kr](mailto:gnfta@cwcci.or.kr))



## 2

## FTA 전문 컨설팅

- (사업개요)** 기업의 FTA 원산지 및 수출관련 애로사항이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FTA전문가 POOL 구성을 통해 FTA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신청자격)**
  - (1) 대기업을 제외한 경남지역 중소기업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 (2) 2년 내('22~23)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  
(단, HS코드 6단위 기준으로 다른 품목 추가되는 경우는 허용)
- (지원규모)** 연간 112개사 내외
- (지원내용)**
  - 품목별 인증수출자 컨설팅(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컨설팅(원산지증명서 최초 발급 건 지원)
  - 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원산지확인서 최초 발급 건 지원)
  - 원산지 사후검증 컨설팅(수출자·제조자 대상 사후검증 지원)
  - \* 1개사 당 상기 4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신청기한)** 2024년 3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E-mail(gnfta@cwcci.or.kr) 신청
  - 신청서 작성 시 전문가 POOL에 등록된 컨설턴트를 지정 후 신청  
(전문가 POOL은 창원상공회의소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 (세부내용)** [창원상공회의소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Click\)](#)
- (문의처)**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 박예진 원산지관리사  
(Tel. 055-210-3048 / E-mail. gnfta@cwcci.or.kr)

## 1 중소기업 전자입찰 실무교육 개최

- (개 요) 경남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지원
- (일시/장소) '24. 6. 19.(수) 14:00 ~ 15:30, 창원컨벤션센터 607호 강의실
- (교육내용) 나라장터 전자입찰 참여방법 등
- (참석대상) 공공조달 참여 예정·희망 중소기업 대표·실무자 등
- (신청방법)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문의(☎055-281-2307)

## 2

##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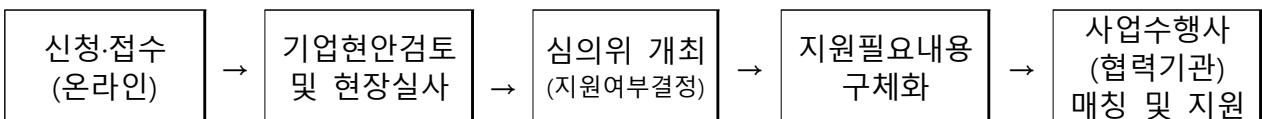


- (제도개요)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사망,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퇴임, 은퇴 시 생활안정 등을 위한 목돈마련 지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 무등록 소상공인
-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부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 (부금납입) 월 5~100만원(1만원 단위 선택), 월납 또는 분기납 자동이체
- (주요혜택)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법에 의한 수급권 보호)
  - 납부 부금 내 일반대출, 무이자대출(의료·재해 등) 가능
- (가입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문의(☎055-281-2305)

## 1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 (사업개요)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해결·상담해 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지원규모) 기업당 2건 이내(2,0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특허		특허맵(일반)	9,000천원 이내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8,000천원 이내
디자인		디자인맵(일반)	9,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개발	16,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목업	6,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	6,000천원~9,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 개발	9,000천원 이내
브랜드		신규브랜드 개발	14,000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 개발	6,000천원 이내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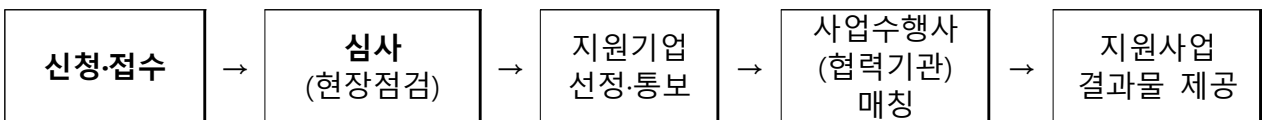
- (신청기한) 2024. 4. 15. ~ 5. 13.(분기별 수시 3차: 6~7월 예정)
- (신청방법) RIPC 사업관리 시스템(www.pms.ripc.org)
- (세부내용) 2024년도 중소기업IP바로지원 신청 시스템(Click)
- (문의처) 경남지식재산센터(055-210-3098)

## 2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 (사업개요)**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생존력 제고
- (지원대상)** 기술을 보유한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의 중소기업
- (지원규모)** 기업당 1건
- (지원내용)**

IP나래 (맞춤형 IP컨설팅)		
<b>[[IP 기술전략]</b> 유망기술 도출 IP 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b>[[IP 경영전략]</b> IP 인프라·조직 구축 IP 자산구축 IP 사업화 전략 IP 브랜드·디자인 경영	17,500천원 이내

-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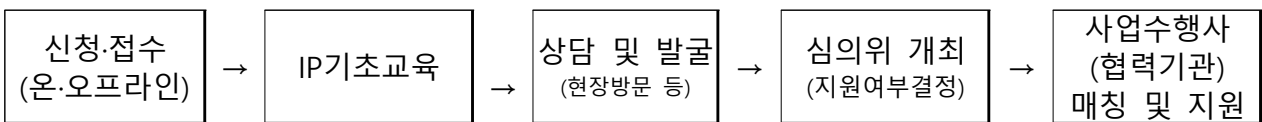
- (신청기한)** 2024. 5월 ~ 6월 중
- (신청방법)** RIPC 사업관리 시스템(www.pms.ripc.org)
- (세부내용)** 2024년도 IP나래프로그램 신청 시스템(Click)
- (문의처)** 경남지식재산센터(055-210-3081, 3085)

### 3 | 소상공인 IP(지식재산)역량강화

-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레시피 등의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규모)**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상담 후 지원 건수 및 한도 결정
-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 및 브랜드 등을 권리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기초교육, IP 전문가의 상담 및 권리화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지식재산 기초교육 및 상담	무료
	상표출원지원	600천원 이내
	IP창출 종합패키지	17,600천원 이내

#### □ (지원절차)



- **(신청기한)** 2024. 3. ~ 수시 접수(연중)
- **(신청방법)**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사업(<https://pms.ripc.org/smallbiz/>)
- **(세부내용)** 2024년도 소상공인 상표 출원 지원 사업 공고(Click)
- **(문의처)** 경남지식재산센터(055-210-3084)

## 1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 **(사업개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일시적 자금난 해소 및 시설투자 증대에 기여

□ **(지원대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우대기업 등 상세 요건은 홈페이지 및 공고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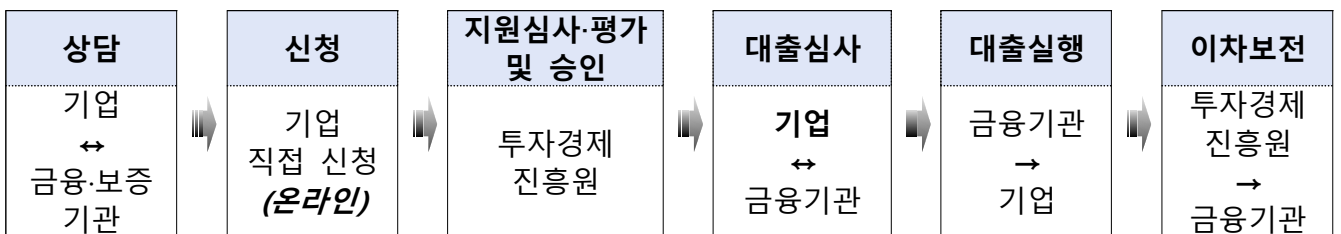
□ **(지원규모)** 정책자금(11,000억 원) 융자 및 이차보전(0.75~2.0%)

자금구분		융자규모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지원한도
합 계		11,000억원			
일반 자금	경영안정자금	4,600억원	2~3년간	연 1.5~2.0%	업체당 10억원
	시설설비자금	3,500억원	5~10년간	연 0.75~2.0%	업체당 20억원
특별자금(경영·시설)		2,900억원	2~10년간	연 1.0~2.0%	업체당 5~50억원

□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은행 협조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 협조대출로 별도의 은행대출심사를 거쳐야 하며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함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대출 시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함

□ **(지원절차)**



-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은 평가에 따른 고득점 순 지원, 특별자금은 자금 소진시까지 접수순 지원

□ (신청기간)

- 경영안정자금 : 분기별 접수(2분기 '24. 4. 29.(월) 9:00 ~ 5. 3.(금) 18:00)
  - 시설설비자금 : 반기별 접수(7월 중 예정)
  - 특 별 자 금 : 연간 접수
- ※ 각 항목별 접수가능 여부의 경우 홈페이지>신청하기 란을 통해 반드시 확인  
(접수 마감되었을 경우 '접수 마감' 표시됨)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gibamoney.or.kr](http://www.gibamoney.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각 자금별로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 공고문을 필히 참조

- (세부내용)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홈페이지](#)

- (문 의 처)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센터  
(055-230-2901~4)

- (사업개요) 경상남도 대표 쇼핑몰 'e경남몰' 운영
- (사업내용)
  - 온라인 시장(e커머스)의 확대 및 유통업계의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업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
  - 도내 우수상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 기회 제공
- (사업계획)
  - (입점업체 상시모집) 농·축·수·임산물 및 가공품, 지역특산물, 지역 문화체험상품 등의 제품
    - 1차 농·축·수·임산물 :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
    - 가공품 : 경상남도 산 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10% 이상 함유된 제품으로 도내에서 생산한 제품
  - (입점 혜택) 상세페이지(1개 제품) 무료제작, 판매수수료 무료
  - (홍보·마케팅 활성화) 각종 행사 및 홍보 마케팅(명절 기획전, 특판전 등)을 통하여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온라인 판로 개척을 본격적으로 지원
  - (정기구독 서비스) 구독경제(정기배송 주문) 카테고리 개설 및 할인 판매를 통해 입점업체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고정 고객을 확보하고자 함
- (세부내용) [e경남몰 홈페이지](#)
- (문의처)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사업2팀(055-230-2907~8)



### 3

##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사업

□ **(사업개요)** 도내 노동자 노동상담, 소규모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을 통한 노동권의 보호·증진, 노동법 교육을 통한 노동법 준수 문화 조성

□ **(사업내용)**

○ 도내 노동자 및 50인 미만 사업장\* 및 기관 등 대상

\* 근로시간제 컨설팅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 가능

○ 사업분야

-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상담 및 진정서 작성,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리인 선임 등

- 노무컨설팅 : 소규모 사업장 노무컨설팅, 근로시간제 컨설팅 등

- 노동법 교육 등 지원 : 필수노동법, 최신판례, 질의응답 등 노동법 교육 지원

□ **(신청방법)**

①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신청 접수

② 신청자와 담당 도민노무사 매칭

③ 일정 협의 후 상담·교육·컨설팅 실시

□ **(세부내용)** [신청서 서식](#)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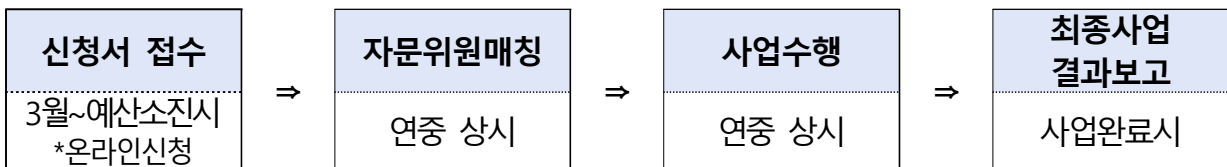
□ **(문의처)**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사업1팀(055-230-2823)

## 1 현장애로 기업지원단 운영사업

- (사업개요) 지역 중소기업 현장애로의 적극 발굴 및 지원·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
- (지원대상) 김해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 (지원내용) 기업의 전 분야 애로사항을 분야별 전문가 자문으로 해결
  - ※ 경영, 법률, 노무, 세무, 수출, 마케팅, 기술, 창업, 판로 등
  - 지원범위

지원규모	기업부담금	지원방식
200건(예정) (기업당 최대 3회 신청 가능)	없음	- 심층민원 1회당 1시간 진행을 원칙으로 함 - 1개사당 최대 3회의 자문을 신청할 수 있음 (분야 중복가능) - 자문 종료 후 기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 필수제출

- (신청접수) 2024년 3월 중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아래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접수
  - ※ 김해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bizsos.gbia.or.kr>
- (세부진행절차)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055-310-9221)

## 1 2024 벤처기업 인증획득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

## □ (사업배경)

- 벤처기업 확인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등의 어려움으로 서류 탈락과 평가 미달 사례등이 빈번하여 벤처기업 기피 등으로 지방 제조업의 벤처기업 감소 추세
  - \* 경남지역 현황 : ('20) 1,900여개 → ('23년말) 1,500여개
- 벤처기업이 되면 세제, 금융, 입지, 인력지원 등 정부로부터 50여 가지의 혜택이 있으며, 수출, 투자 등에서도 혜택이 크며 첨단 제조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음

## □ (사업내용) 벤처 희망기업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 진행

- 관련 전문가들이 벤처기업 작성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질문 답변 등을 통한 완전한 이해가 가능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 밀착 컨설팅 지원
- 경남벤처기업협회에서 위촉한 전문가(28명) 및 경남지방중소벤처 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
  - \* 참여기업 업종에 따라 관련 전문가 배정
- 전문가 수당은 1일 20만원이며, 기업부담금은 없음
  - 기업당 2일 지원하며, 추가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 컨설팅 유도

## □ (신청접수) 사업비 소진 시까지(2024년 목표 : 100개사/ 경상남도비 지원)

□ (신청방법) 경남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gnventure.c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신청

## □ (문의처) 경남벤처기업협회(055-238-9100)

